

서산 석화기업 고용위기 근로자 및 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- 이·전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-

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고용노동부, 충청남도과 함께 서산시 석유화학 및 전·후방 연 관 산업 분야 이·전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자 「충남 버팀이음 프로젝트」를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, 관련 근로자 및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※ (당초 신청기간) 2026. 3. 17. ~ 3. 31. → (연장 신청기간) 2026. 3. 17. ~ 4. 17.

2026년 4월 6일

(재)충남테크노파크 원장(代)

I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이·전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'26. 3. 1.~ 12. 31.
- 신청기간 : '26. 3. 17. ~ 4. 17.
- 지원대상 : 석화(전후방)산업 이·전직 근로자 (360명), 기업(260명)

구분	이·전직 근로자	채용기업	비고
산업	석유화학업 및 전·후방 산업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	동일(기업 조건)	KSC C20 및 C19, C22, C23
기업 규모	상시근로자 5 ~ 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 기업(26년 2월 말 기준)에 재직 중인 자	동일(기업 조건)	
근로 계약	산업위기 지정일(2025.8.28.) 이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신규 취업한 자	좌측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	
근속 기간	사업 추진일(2026.3.1.)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한 자	좌측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	
근로자 (기업)	①유형, ②유형 서산시 ③유형 충청남도(서산 외) ※ 2p 지원유형 참조	①유형, ②유형만 해당(서산시) ※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사업장, 기업	③유형 기업지원 제외

구분	이·전직 근로자	채용기업	비고
주소지	※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주소지로, 개인 주소지와 무관	부설연구소, 지정, 공장 소재지 등 포함	
연령	만 15세 이상인 자	버팀이음 거버넌스 및 실무자협의회, 모니터링 등 1회 이상 참여	
근로시간	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		
고용보험	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		

※ 기타 제외 조건은 'Ⅲ. 대상별 지원사업 제외조건(5p~6p)' 참조

○ 지원유형

- ① 혹은 ②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에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- ③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
구분	지원대상	지원 조건		지원 인원
		피보험자 상실 기업(퇴사 기업) ➡	이·전직 기업	
①	근로자/기업	서산시 석화(전후방) 산업 ➡	서산시 소재 기업(모든 산업)	260명
②	근로자/기업	전국(서산 內 포함) 기업(모든 산업) ➡	서산시 소재 석화(전후방) 산업	
③	근로자	서산시 석화(전후방) 산업 ➡	충남도 내(서산 外) 기업(모든 산업)	100명

○ 지원내용 및 방법

- 3개월 근속 기준, 최대 2회 지급(자격 ③의 경우 1회 지급)

구분	사업유형	1회 지원금	1회 지원 방법	총 지원금
① 근로자	장려금	1,500천원	1,000천원(현금) + 500천원(지역화폐)	3,000천원(2회)
② 근로자	장려금	1,500천원	1,000천원(현금) + 500천원(지역화폐)	3,000천원(2회)
③근로자	장려금	900천원	900천원(현금)	900천원(1회)
①,② 기업	간접노무비	300천원	300천원(현금)	600천원(2회)

- ※ 1차 지원금은 3개월 근속 시 지급, 2차 지원금은 6개월 근속시 지급(3개월 근속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※ 1차 지원금 수령 이후 2차 지원금 신청 전 퇴사 할 경우, 월 단위[월 50만원(근로자), 월 10만원(기업)]로 지급(일할 계산 아님)

○ 지원자 우선순위

- ① 저소득자(최신 연봉계약서)
- ② 부양가족 수 많은 자(주민등록등본)

○ 추진절차



※ 최초 기업/근로자 선정 후(1~2), 사업운영 반복(3~5) / 근로자 ③유형은 3개월 근속확인 후 90만원 1회 지급
 ※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 (참여신청) 유형 ①, ②의 경우, 기업에서 일괄 신청 접수하며, 유형 ③의 경우는 근로자(개인)가 신청
- (심사·선정) 근로자 기준 적격여부, 기업평가 등 이·전직 근로자/기업 심사 및 선정 통보
- (지원금 신청) 기준일(2026.3.1.) 또는 근로계약일(기준일 이후) 이후 근속 기준(3개월, 6개월)에 따라 2회에 걸쳐 신청
 (※ 지원금 신청은 2026.6.1.(월)부터 가능)
- 예시 1) 2025.11.1. 채용한 경우: **기준일(2026.3.1.)**부터 근속기간 산정
 예시 2) 2026.3.15. 이후 채용한 경우: 채용일부터 근속기간 산정
- (지원금 지급) 근로자 근속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장려금(근로자 개인계좌) 및 간접노무비(기업 계좌) 지급
- (사후관리) 근로자 근속유지 및 만족도 조사, 정책제언 등 추진사업 성과 기초자료 조사 등

II. 신청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및 대면접수
 - 온라인 접수 : 충남버팀이음.kr
 - 현장 접수처 : 대산보건지소(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78-6)
- 신청기간 : '26. 3. 17.(화) ~ 4. 17.(금)
 - 현장 접수처 : (월~금) 09:00~17:30
- 문의처 : 충남테크노파크 041) 660 - 4944 ~6
- 제출서류

연번	지원분야	서류명	비고
1	이 전 직 자 근 로 자	이·전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서식3)	
2		개인정보 수집, 동의서(서식4)	
3		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(서식 5)	
4		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	택1
5		근로계약서	
6		연봉계약서	
7		석유화학 및 전후방산업 관련 재직 증빙 서류 -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상실), 재직증명서(고용보험 취득) 등	택 1
8	이 전 직 자 채 용 기 업	이·전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서식1, 기업)	
9		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(서식2)	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

III. 대상별 지원사업 제외조건

(근로자)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

- ① 지원 대상 기간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*에 참여 중인 자
* 예)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일자리 채용 지원금 등
- ②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신청일 기준)
 - 다만,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
- ④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 등) 관계에 있는 자
- ⑤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1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(정년 후 동일 사업장에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경우는 제외)
- ⑥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
- ⑦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)
 -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
 - 방통대·사이버대·학점은행제·야간대학·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
- ⑧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
- ⑨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

(사업주)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는 지원제외

- ① 국가 및 지자체와 그 출자출연기관, 공공기관 등
- ②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및 소비·향락업 등의 업종 기업
- ③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한 자를 1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기업
- ④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재택근무자로 채용한 기업
- ⑤ 감원방지기간(사업 지원기간)에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
 - 감원방지기간에 지원 대상자를 경영상 해고, 고용조정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에는 감원 발생 다음 날부터 동 사업* 지원은 일할 계산 없이 모두 중단

- 지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해당자에 대한 지원만 중단
 - ⑥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(사업주)
 - ⑦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- * 예) 고용창출장려금, (지역)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